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49

제안연월일 : 2024. 2. . 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 내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규사업 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○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4조
 -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침

○ 추진 필요성

-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 돌봄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 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범위

- 위탁범위 :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-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및 관리 등 전반 사항
 - 종사자 모집·채용, 복무, 교육 등 관리
 - 실적관리, 사업비 등 정산보고 등
- 근무인력: 2명(전담행정인력 1, 시간제 동행매니저 1)

라. 민간위탁기간

○ 위탁기간 : 2024. 4. 8. ~ 2025. 12. 31.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- 수탁자격 :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보조금 예산 지원 : 72,534천원(도 21,760, 군 50,774)
 - 인건비(2명) : 69,534천원
 - 운영비(사무관리비) : 3,000천원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

-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
 - 지역 내 돌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과 전문성, 사업의 능률성이 함께 요청되는 사무로 판단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4조에 따른 사무 위탁 가능

- 위탁 필요성
 -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인력채용 및 교육, 서비스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 기대 가능
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- 전문기관의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활한 서비스 연계처리 등이 가능한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방식이 적합

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 -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예산 확보(72,534천원) : 2024년 당초 예산
 -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지침 확정(도): 2023. 12. 28.
 - 군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: 2024. 2월
 -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: 2024. 3. 15. ~ 3. 29.
 - 서류 접수 : 2024. 3. 25. ~ 3. 29.
 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정 : 2024. 4. 3.
 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4. 4. 5. 예정

○ 관련법령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4조
- 「노인복지법」제4조 및 제27조의2
- 「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제12조 및 제14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- 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

제12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- 2.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
- 3.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4조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3.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